내 수탁 자산은 도산으로부터 절연되어 있는가?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이 질문은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맡기는 모든 고객에게 중요합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펀드, 프라이빗 뱅크의 가상자산 데스크를 이용하는 패밀리오피스, 수탁자가 모두 해당합니다. 두 관할권은 서로 다른 법적 메커니즘으로 이 질문에 답하지만, 그 결과는 법리에서 짐작되는 것보다 더 비슷합니다. 스위스는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일부터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242a조는 파산한 수탁기관이 고객을 위해 언제나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로 약정한 가상자산을 파산재단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자산은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배정되어 있거나, 고객 공동체에 배정되어 있으면서 해당 고객의 몫이 명확히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1] 싱가포르는 신탁법에 의존합니다. 수탁기관이 고객의 자산을 신탁으로 보유하면 그 자산은 보호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대상 및 수익자의 확정성과 실제 분리가 필요합니다. 2024년 4월 4일부터 지급서비스규정(Payment Services Regulations)은 라이선스를 받은 DPT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객 자산을 분리된 계정에 신탁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하며, 이로써 의사와 분리가 법에 의해 충족됩니다.[2]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취약점은 두 곳에서 같습니다. 옴니버스 지갑은 수탁기관의 기록이 부실하면 스위스의 몫 확정 가능성 요건을 깨뜨립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고객의 권리가 대체 가능한 풀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정의되지 않는 한 대상의 확정성 요건을 깨뜨립니다. 스테이킹되거나, 대여되거나, 재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언제나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스위스법상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수탁기관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순간 더 이상 신탁으로 보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FlowBank의 붕괴는 스위스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약정은 분리 가능한 반면 법정화폐 예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Hodlnaut와 Zipmex 절차에서는 싱가포르 법원이 고객이 수익자인지 무담보 채권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조항별로 검토하였습니다.[3]

질문의 순서

1. 수탁 계약에서 약정 내용을 읽습니다. 수탁기관이 특정 자산 또는 동등한 수량을 언제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합니까? 수탁기관이 자산을 사용, 대여, 스테이킹하거나 재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약정은 소비대차나 예금이며 고객은 두 관할권 모두에서 무담보 채권자입니다.
2. 지갑 구조를 확인합니다. 고객별로 개별 배정된 온체인 주소라면 스위스에서는 분리 가능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신탁재산입니다. 오프체인 원장을 둔 옴니버스 지갑이라면, 스위스에서는 원장이 각 고객의 몫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경우에만 분리 가능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약관이 풀에 대한 비례적 수익권을 정의한 경우에만 신탁재산입니다.
3. 수탁기관의 라이선스 지위를 확인합니다. 스위스 은행이나 증권회사라면 은행법(BankA) 제16조 제1bis호와 분리에 대한 FINMA의 감독이 적용됩니다. 스위스 SRO 회원은 DEBA 제242a조에만 의존합니다. 싱가포르 MPI는 보호 규정과 MAS의 검사를 받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라이선스가 없는 수탁기관은 일반법상의 보호만 제공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4. 기록 관리를 점검합니다. 온체인 잔액과 고객 원장 간의 대조 빈도, 고객 자산 분리에 관한 감사인 보고서, 키 관리 정책을 요청합니다. 일일 대조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수탁기관은 파산 시 몫이 확정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5. 스테이킹과 수익 기능을 검토합니다. 고객에게 지급되는 수익은 자산이 사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고객이 수익과 도산 절연을 모두 원한다면, 수탁기관이 고객이 식별할 수 있는 검증인을 통해 고객을 대신하여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된 자산이 고객에게 귀속되는 위임 구조로 약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FINMA는 은행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이를 인정합니다.[4]
6. 준거법 문제를 검토합니다. 스위스 수탁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싱가포르 신탁은 헤이그 신탁협약에 따라 스위스에서 승인되며, DEBA 제242a조는 수탁자의 분리 청구권을 보호합니다.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스위스 수탁 계약은 수탁기관의 도산법정지법(lex concursus)에 따라 싱가포르 도산 절차에서 효력이 인정되며, 수탁기관이 스위스 기관이라면 그 법은 스위스법입니다.[5]

특징	스위스	싱가포르
법적 메커니즘	DEBA 제242a조에 따른 법정 분리. 은행의 경우 은행법 제16조	명시신탁 또는 법정신탁. 지급불능·구조조정 및 해산법(IRDA)은 신탁재산을 보호함
개별 배정 지갑	분리 가능	의사와 분리가 증명되면 신탁재산
옴니버스 지갑, 양호한 원장	분리 가능(몫이 명확히 확정 가능)	약관에 비례적 지분이 정의되어 있으면 신탁
옴니버스 지갑, 부실한 원장	분리 불가	불확정성으로 신탁 불성립. 무담보 채권
	분리 불가(소비대차/예금)	신탁 없음. 무담보 채권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특징	스위스	싱가포르
수탁기관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음		
수탁기관에 의한 스테이킹	FINMA의 조건하에서만 분리 가능	약관에 따라 다름. 스테이킹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무담보
라이선스를 받은 수탁기관	FINMA의 분리 감독 또는 SRO 감사	2024년 4월부터 MAS 보호 규정
도산 절차	파산 또는 FINMA 청산. 제242a조에 따른 분리 청구	청산, 사법관리 또는 회생계획. 신탁상 청구

실무 메모

어떤 수탁기관에든 100만 스위스프랑이 넘는 자산을 맡기기 전에 세 가지 문서를 요청하십시오. 수탁 계약서, 고객 자산 분리에 관한 최신 감사인 확신 보고서, 그리고 지갑 구조에 관한 1쪽 분량의 설명서입니다. 수탁기관이 세 번째 문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내부 원장을 둔 옴니버스 구조라고 가정하고 몫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물으십시오. 그 답변은 라이선스보다 귀하의 도산 시 지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주

1. Debt Enforcement and Bankruptcy Act, 1889년 4월 11일(채무추심 및 파산법, DEBA; SchKG, SR 281.1), 제242a조 및 제242b조; 은행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16조 제1bis호; 제D편 제IV장 및 제H편 제VII장 참조. ↩
2. 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9, 2024년 4월 4일부로 개정, 고객 자산 보호에 관한 요건; 제K편 제II장 및 제J편 제II장과 제V장 참조.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3. FlowBank 사건은 제H편 제VII장에서 분석함; Re Zipmex와 Re Hodlnaut는 제J편 제V장 및 제N편 제IV장에서 분석함. ↩
4. FINMA Guidance 08/2023, 2023년 12월 20일, 수탁기관에 의한 스테이킹 및 스테이킹된 자산을 수탁 자산으로 취급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부분; 제E편 제VIII장 참조. ↩
5. Swiss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1987년 12월 18일(국제사법, IPRG/PILA; SR 291), 제149a조 이하; 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1985년 7월 1일(SR 0.221.371); 제D편 제VIII장 및 제IX장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